

22년 법인세 신고대비

**알아두면 유익한**  
**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**

알아두면 유익한  
**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**



# 공제 · 감면 Contents

- I 고용 지원 (5개)
- II 투자촉진 지원 (6개)
- III 중소기업 지원 (3개)
- IV 연구인력 개발 (3개)
- V 기타 지원 (5개)

참고자료

[상시근로자, 최저한세, 농어촌특별세, 세액공제 · 감면 중복적용 배제]



# I . 고용 지원 조세 특례

1.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2.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3.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
4.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5.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



# 1.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## 제도개요

-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(중소·중견기업 3년)간 세액공제 적용

## 적용대상·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\*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
  - \*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숙박업 제외), 주점업(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)
- (공제액)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× 다음의 금액

구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	대기업	
	수도권	지방	수도권	지방	수도권	지방
청년 등* 상시근로자	1,100만원	1,300만원	800만원	900만원	400만원	500만원
그 외 상시근로자	700만원	770만원	450만원		-	

\* 청년(15세 ~ 29세), 노령자(60세 이상), 장애인, 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자

## 사후관리

-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(1차 연도)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
  -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,
  -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×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



## 2.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


### 제도개요

-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

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
- (공제액)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\* × 다음의 공제율  
\*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급여액 × 약 10% (사회보험료율 :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)

구분	청년 등 상시근로자	그 외 상시근로자	
		신성장서비스업*	기타
공제율	100%	75%	50%

\* 컴퓨터 프로그래밍,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, 엔지니어링사업, 서적·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, 물류산업 등

### 사후관리

-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('22.1.1.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)  
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,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×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



### 3.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

#### 제도개요

-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  - \*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 및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
  - \* 정규직 전환 : 기간 정함없이 근로계약 체결,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,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가 직접 고용 등

#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· 중견기업
- (공제액)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(1인당) × 다음의 공제액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
공제액	1,000만원	700만원

#### 사후관리

-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
  - ①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

## 4.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

### 📖 제도개요

-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### 🗂️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
  -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\*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
  - \* (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-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) ÷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
  -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
- (공제액) {<sup>㉠</sup>(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× 다음의 기본 공제율) +  
<sup>㉡</sup>(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× 다음의 추가 공제율)}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그 외
기본 · 추가 공제율	20%	10%	5%

### 📅 사후관리

- ㉡ 추가공제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
  - ①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



## 5.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

### 제도개요

- ①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간 세액공제 적용
- ② 육아 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· 중견기업
  - ① 해당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임신 · 출산 · 육아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내에 고용
  - ②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 후 복직
- (공제액)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× 다음의 공제율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
경력단절여성 고용 · 육아휴직자 복직*	30%	15%

\* 육아 휴직자 복직의 경우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며,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

### 사후관리

- 육아휴직 복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
  - ①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



# II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

1. 통합투자세액공제
2.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
3.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
4. 환경보전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
5.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6.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

## 1. 통합투자세액공제 (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)

### 📄 제도개요

-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'20·'21년 투자분은 종전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

### 👤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(조합법인 제외) 사업자  
-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(토지,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), 특정 시설 · 업종 관련 유 · 무형자산에 투자
- (공제액) {당해연도 투자액 × 공제율} + {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3년 평균 투자액) × 3%(국가전략 4%)}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공제율(일반)	10%	3%	1%
공제율(신성장기술)	12%	5%	3%
공제율(국가전략) '21.7월 투자분부터~	16%	8%	6%

\* {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3년 평균 투자액) × 3%(국가전략 4%)} 은 (당해연도 투자액 × 공제율) 의 2배 한도 적용

### 📅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(특정 시설 · 업종 유 · 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)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
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## 2.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

### 📖 제도개요

-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'20·'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

### 👥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
  - ① 공정개선 · 자동화 · 정보화 시설 및 첨단기술설비(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)
  - ② 공급망 관리 시스템설비(자재조달, 생산계획,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)
- (공제액) 신규\*로 구매하는 자산 × 다음의 공제율  
\* 중고품, 운용리스,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,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공제율	10%	5%	1%

### 📅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· 임대한 경우
  -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

## 3.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

## 제도개요

-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'20·'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

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
  - 에너지절약형 시설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7), ② 중수도 및 절수설비·기기
  - 신·재생 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 등 제조시설(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)
- (공제액) 신규\*로 구매하는 자산 × 다음의 공제율  
\* 중고품, 운용리스,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,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공제율	7%	3%	1%

##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·임대한 경우
  -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

## 4.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### 제도개요

-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'20·'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

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
  - ① 환경보전시설(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)
- (공제액) 신규\*로 구매하는 자산 × 다음의 공제율  
\* 중고품, 운용리스,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,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공제율	10%	5%	3%

###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· 임대한 경우
  -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## 5.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

### 📁 제도개요

-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원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'20·'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

### 👥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대상자산(운휴중인 자산 제외)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
  -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, 시계·시험기기 및 계측기기,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
  -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
- (공제액) 신규\*로 구매하는 자산 × 다음의 공제율  
\* 중고품, 운용리스,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,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공제율	7%	3%	1%

### 📅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·임대한 경우
  -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



## 6.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### 제도개요

-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'20·'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

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

- ①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, ② 종업원용 기숙사, ③ 종업원 휴식·체력단련 등 시설, ④ 사내 부속 의료기관, ⑤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편의시설 등(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9), ⑥ 직장어린이집

- (공제액) 시설투자\* 금액 × 다음의 공제율

\* 시설을 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구입, 중고품 투자 허용,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,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직장어린이집
공제율	10%	5%	3%	10%

###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·임대 또는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
  -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# III.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

1.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
2.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3.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



## 1.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

### 📖 제도개요

-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

### 🗨️ 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  - ① 감면대상 업종(48개)을 영위 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제조업 등		도·소매, 의료업		지식기반산업
	수도권 내	수도권 외	수도권 내	수도권 외	수도권 내
중기업	-	15%	-	5%	10%
소기업	20%	30%	10%	10%	-

\* (감면한도) 1억원 -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× 5백만원

### 📅 사후관리

-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





## 2.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

### 📁 제도개요

-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

### 🗨️ 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감면대상 18개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
  - ① 창업중소기업(청년 · 생계형 창업기업 포함),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
  -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,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기업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일반창업		벤처 · 에너지신기술기업		청년 · 생계형 창업	창업보육센터 사업자
	기본	신성장	기본	신성장		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	-	-	50%(5년)	75%(3년)+50%(2년)	50%(5년)	50%(5년)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	50%(5년)	75%(3년)+50%(2년)	50%(5년)	75%(3년)+50%(2년)	100%(5년)	50%(5년)

### 📅 사후관리

-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- ①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



## 3.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

### 📖 제도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\*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
\*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,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는 하는 제도

### 🗨️ 적용대상·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
  - ①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액(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)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
  - ② 약속어음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
- (공제액)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(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) × 다음의 공제율

세금계산서 등*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	15일 이내	16일 ~ 60일
공제율	0.2%	0.1%

\*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세금계산서, 계산서 및 영수증

### 📋 사후관리

-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

# IV.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

1.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
2.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
3.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





## 1.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

### 📄 제도개요

-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### 🗨️ 적용대상·공제액

- (대상) 연구·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
- (공제액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비용 × 다음의 공제율

구분		중소기업		중견기업		대기업
		일반중소	유예기업	일반중견	코스닥중견	
일반 (선택)	당기분	25%	~3년차 15%, ~5년차 10%	8%		~2%
	증가분	50%		40%		25%
신성장·원천기술		30%~40%		20%~30%	25%~40%	20%~30%
국가전략기술('21.7월 지출분부터)		40%~50%		30%~40%		30%~40%

### 📄 사후관리

- 기업부설 연구소, 연구개발(창작)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
  - ①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배제



## 2.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

### 제도개요

-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
  -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
  -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
  -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닐 것
- (공제액)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× 다음의 공제율

구분	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
공제율	10%

–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% 감면

\* 제외 :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, 최대주주 ·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

### 사후관리

-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



### 3.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

#### 제도개요

-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#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**내국법인**
  - ① 출자대상 :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
  - ② 출자방법 :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
- (공제액) 출자지분 취득금액 × 공제율

구분	내국법인(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)
공제율	5%

\* 제외 :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
#### 사후관리

-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
  - ①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# V 기타 지원 조세 특례

1.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
2.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
3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
4.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5.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



# 1.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

## 📖 제도개요

-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

## 🗨️ 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사회적 기업	장애인 표준사업장
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	100%	100%
그 다음 2년간	50%	50%
감면 한도	1억원 + 취약계층* 상시근로자수 × 2천만원	1억원 +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× 2천만원

\*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

## 📅 사후관리

-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,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
  - ①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

## 2.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

### 제도개요

-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세액감면 적용

### 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감면대상업종\*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법인 사업자

\*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(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18개)
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	그 다음 2년간
감면율	100%	50%

\* 감면한도(중소기업 외 적용) : (가) + (나)

(가)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액 × 50%

(나)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× 1천5백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원)

### 사후관리

-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

①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원(청년 등 2천만원)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



### 3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

#### 제도개요

-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#### 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**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
  - \* 임차인 요건 : 소상공인, 임대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,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
- (공제액)**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\* × 다음의 공제율
  - \*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

구분	법인
공제율	70%

#### 사후관리

-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 ·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
  -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 적용배제
  -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



## 4.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### 제도개요

-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

### 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
  - ①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중개업, 부동산매매업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
  -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(중소기업 2년)이상 계속 사업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기업일 것
  -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7년간 (성장관리권역 · 광역시 등 5년간)	3년간 (성장관리권역 · 광역시 등 2년간)
감면율	100%	50%

### 사후관리

- 이전 후 ①사업 미개시, ②3년 이내 폐업 · 해산, ③수도권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한 경우  
 {① · ③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, ②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} +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



## 5.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

### 제도개요

-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

### 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본사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
  - ①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중개업, 부동산매매업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,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
  -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고, 이전 후 2년 내 본사 양도 또는 본사 양도 후 2년 내 사업개시 할 것
  - ③ 이전 전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7년간 (수도권 연접지역 등 5년간)	3년간 (수도권 연접지역 등 2년간)
감면율	100%	50%

### 사후관리

- 이전 후 ①사업 미개시, ②3년 이내 폐업 · 해산, ③수도권에 본사를 설치, ④이전본사 임원수가 50% 미달한 경우 {① · ③ · ④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, ②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} + 이자상당액(日 0.025%)을 가산하여 납부

# 참고 자료

1.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
2. 최저한세 개면 및 계산방식 등
3. 농어촌특별세 개념 및 계산방법 등
4. 세액공제 ·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

# 01.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



## 상시근로자 개념

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



## 상시근로자 제외대상(표준)

-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(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),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,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,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 및 친족관계(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등),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사회보험 등 미납자,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\*

\*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



## 상시근로자 계산방법

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÷ 과세연도 개월 수

\*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.5명, 일정요건 충족 근로자는 0.75명

※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

- 창업한 경우 : 0

- 합병 · 분할 · 사업양수 등인 경우 :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

# 01. 상시근로자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



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 · 감면은 21개,  
공제 · 감면별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함

## <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>

-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(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),  
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,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,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 및 친족관계,  
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사회보험 등 미납자,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\*

\*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

## <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· 감면 유형 >

- ㉠ 고용증가시 세액공제, ㉡ 고용유지시 세액공제, ㉢ 고용증가시 추가감면(감면비율 추가),  
㉣ 고용증가시 감면한도 증가, ㉤ 고용감소시 감면한도 축소

순번	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· 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공제 · 감면	공제 · 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	
				① ~ ⑥	⑦
1	㉠ 고용증가시 세액공제	§ 29의7	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○	×
2		§ 30의4	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○	×
3	㉡ 고용유지시 세액공제	§ 19	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○	○
4		§ 29의3	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○	×
5		§ 29의4	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○	○



# 01. 상시근로자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

알아두면 유익한  
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순번	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· 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공제 · 감면	공제 · 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	
				① ~ ⑥	⑦
6	㉞ 고용유지시 세액공제	§ 30의3	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	○	×
7	㉟ 고용증가시 추가감면	§ 6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○	×
8	㊱ 고용증가시 감면한도 증가	§ 12의2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○	×
9		§ 64	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○	×
10		§ 85의6	사회적기업 기업에 대한 감면	○	×
11		§ 85의6	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○	×
12		§ 99의9	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	○	×
13		§ 121의8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○	×
14		§ 121의9	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	○	×
15		§ 121의17	기업도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	○	×
16		§ 121의20	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○	×
17		§ 121의21	금융중심지 창업 등에 대한 감면	○	×
18		§ 121의22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등 감면	○	×
19		§ 121의22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○	×
20		㊲ 고용감소시 감면한도 축소	§ 7	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	○
21	§ 99의11		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	○	×

# 참고 1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사례

① '21년 직원 현황('21.1월초 기준 상시근로자 10명, 연중 입사자 4명, 연중 퇴사자 1명)

번호	이름	입사일	퇴사일	총급여	비고	번호	이름	입사일	퇴사일	총급여	비고
1	정부가	'09.08.01	-	65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	8	박순진	'20.01.01	-	15백만원	급여원천징수 미이행
2	임소득	'09.09.01	-	64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	9	야무진	'20.03.03	-	12백만원	월 48시간 근무
3	유소비	'09.10.01	-	63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	10	강소유	'19.05.06	'21.03.15	20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
4	김원천	'09.11.01	-	62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	11	이준수	'21.04.30	-	20백만원	근로계약 1년 미만
5	나법인	'10.01.01	-	60백만원	최대주주	12	원강직	'21.05.01	-	35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
6	조세심	'10.01.01	-	40백만원	감사	13	유성실	'21.07.01	-	35백만원	근로계약 1년 이상
7	나모범	'18.01.01	-	50백만원	나법인의 자	14	김영민	'21.10.01	-	75백만원	총급여 7천만원 이상

② 상시근로자 계산 (67명 ÷ 12개월 = 5.58명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월초 근무자	10	10	10	9	10	11	11	12	12	12	13	13	
입사(+)				+1 이준수	+1 원강직		+1 유성실			+1 김영민			
퇴사(-)			△1 강소유										
월말 근로자	10	10	9	10	11	11	12	12	12	13	13	13	
상시근로자 제외자*	5 <sup>1)</sup>	5 <sup>1)</sup>	5 <sup>1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6 <sup>2)</sup>	
상시근로자 최종	5	5	4	4	5	5	6	6	6	7	7	7	67

1) 나법인(최대주주), 조세심(임원), 나모범(최대주주 직계존비속), 박순진(원천징수 미이행자), 야무진(단시간 근로자),

2) 1)에 이준수(1년 미만 근로자) 추가

※ 김영민(총급여 75백만원)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에만 상시근로자 수 제외(본 사례 포함)

##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(‘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)

< 2020년 고용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: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⑤⑥⑦, ’21.3.16. 개정 >

구분	종 전	개 정
사후 관리	'18년('19년) 대비 '20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	
	'20년에 추가납부* *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× 해당 상시근로자 공제세액	'20년에 추가납부 유예
세액 공제 적용	'18년('19년) 대비 '20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	
	'20년부터 세액공제 배제	'20년에 세액공제 배제 {'18년(19년)대비 고용유지시 '21년('22년)에 세액공제 가능}
	'18년('19년) 대비 '20년에 상시근로자를 유지한 경우	
	'20년에도 세액공제 적용	'20년에도 세액공제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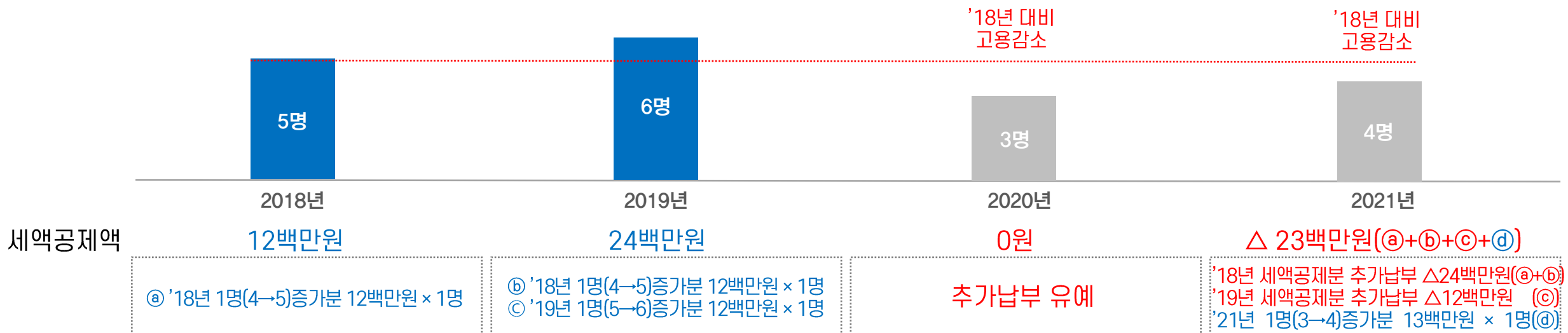
##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('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)

[1 - ①]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8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

'18년 대비 '20년 고용 감소(5명 → 3명), '21년 고용 감소(5명 → 4명)한 경우

년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	-	1차년도	2차년도	유예	3차년도
청년 상시 근로자수	4명	5명	6명	3명	4명

\* 청년 1인당 12,000,000원 공제 (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,000,000원 공제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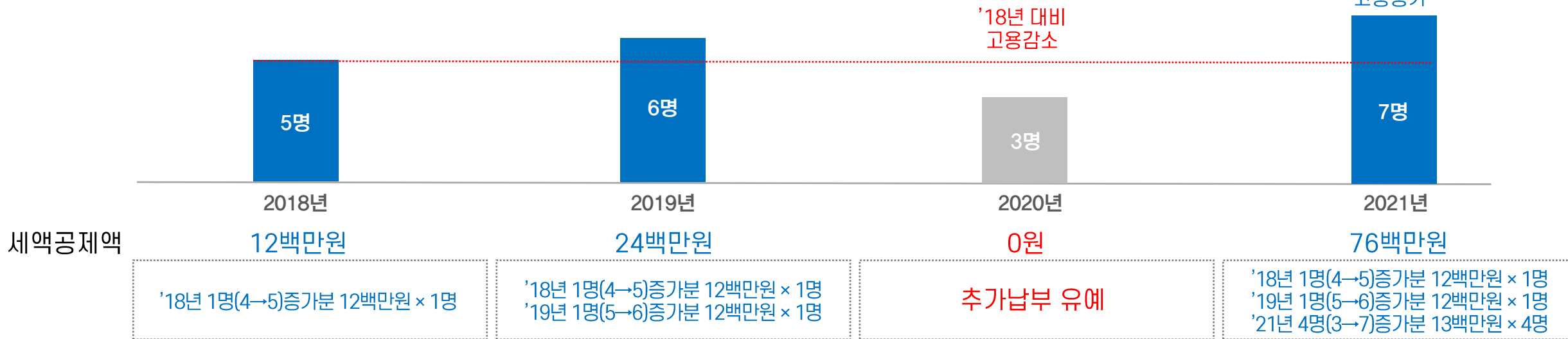
##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(‘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)

[1 - ②]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8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

‘18년 대비 ‘20년 고용 감소(5명 → 3명), ‘21년 고용 증가(5명 → 7명)한 경우

년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	-	1차년도	2차년도	유예	3차년도
청년 상시 근로자수	4명	5명	6명	3명	7명

\* 청년 1인당 12,000,000원 공제 (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,000,000원 공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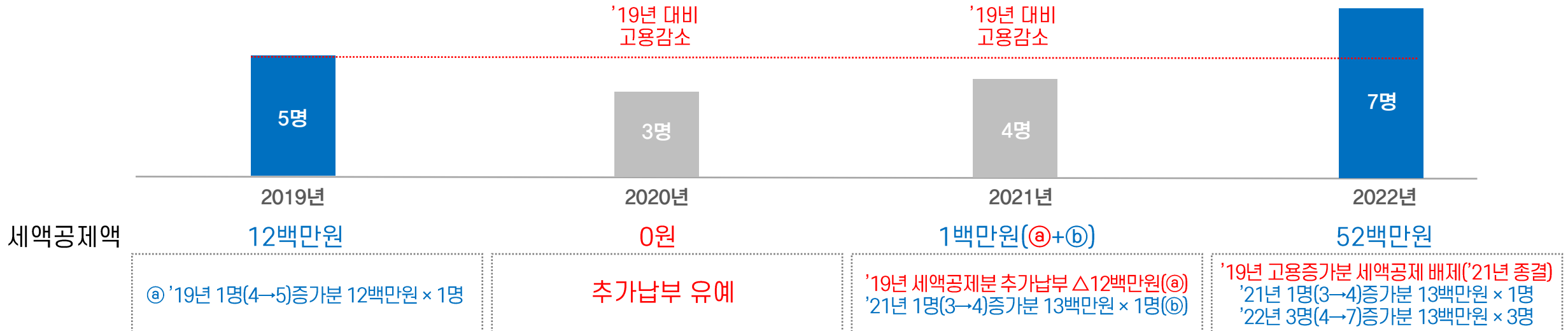
##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('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)

[2 - ①]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

'19년 대비 '20년 고용 감소(5명 → 3명), '21년 고용 감소(5명 → 4명), '22년 고용 증가(5명 → 7명)한 경우

년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	-	1차년도	유예	2차년도	3차년도
청년 상시 근로자수	4명	5명	3명	4명	7명

\* 청년 1인당 12,000,000원 공제 (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,000,000원 공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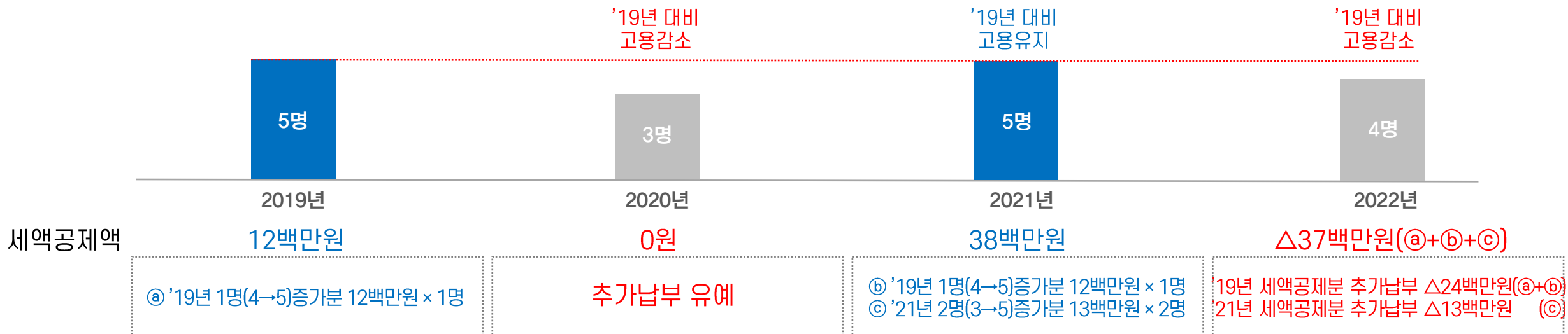
##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('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)

[2 - ②]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

'19년 대비 '20년 고용 감소(5명 → 3명), '21년 고용 유지(5명 → 5명), '22년 고용 감소(5명 → 4명)한 경우

년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	-	1차년도	유예	2차년도	3차년도
청년 상시 근로자수	4명	5명	3명	5명	4명

\* 청년 1인당 12,000,000원 공제 (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,000,000원 공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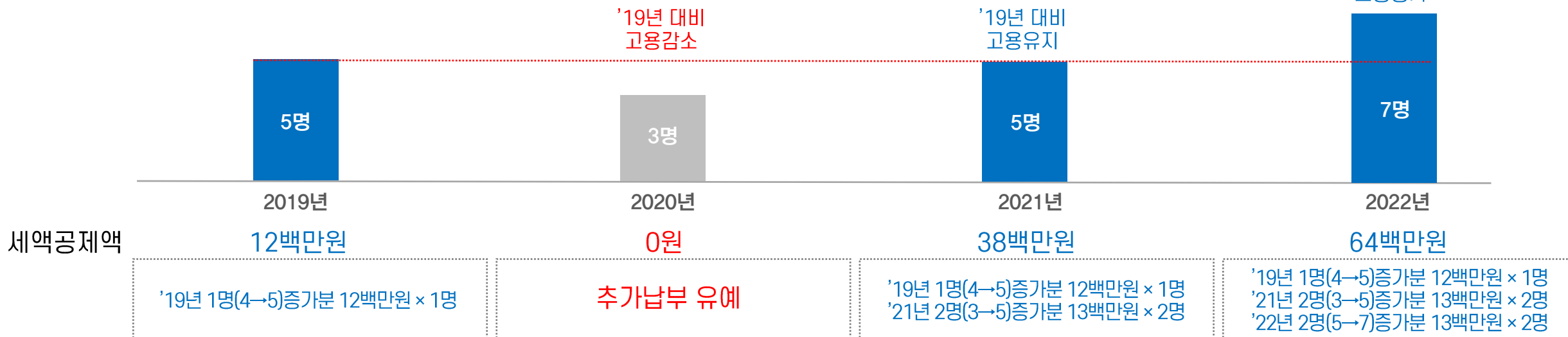
##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('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)

[2 - ③]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

'19년 대비 '20년 고용 감소(5명 → 3명), '21년 고용 유지(5명 → 5명), '22년 고용 증가(5명 → 7명)한 경우

년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	-	1차년도	유예	2차년도	3차년도
청년 상시 근로자수	4명	5명	3명	5명	7명

\* 청년 1인당 12,000,000원 공제 (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,000,000원 공제)





## 02.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



### 최저한세 제도 개념

조세감면(공제, 감면, 비과세 등 포함)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**최소한의 세금**



### 최저한세 계산방식(다음 중 큰 금액)

-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
-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



### 최저한세 세율

중소기업			그 외		
일반	유예기간		과표 100억원 이하	과표 1,000억원 이하	과표 1,000억원 초과
	1~4년	5~6년			
7%	8%	9%	10%	12%	17%

※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

- 신고 : 납세자 자진 선택
- 경정 : 손금산입 · 익금불산입 → 세액공제 → 세액감면 → 소득공제 · 비과세

# 02.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

알아두면 유익한  
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

## 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 · 감면

-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(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)

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조세감면제도	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조세감면제도
1	세액 공제	§ 7의2	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	13	세액 공제	§ 30의3	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
2		§ 7의4	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14		§ 30의4	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3		§ 10	R&D 세액공제(중소기업 제외)	15		§ 32④	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
4		§ 12②	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	16	세액 감면	§ 6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100% 감면 외)
5		§ 12의4	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17		§ 7	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
6		§ 13의2	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	18		§ 12의2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50% 감면)
7		§ 19①	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19		§ 31④⑤	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
8		§ 24	통합투자세액공제	20		§ 32④	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
9		§ 29의3	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	21		§ 63	공장의수도권인(과밀억제권역제외) 이전감면(중소기업)
10		§ 29의4	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22		§ 64	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
11		§ 29의7	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23		§ 96의2	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
12		§ 30의2	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	24		§ 99의9	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50% 감면)

# 02.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

알아두면 유익한  
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

##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세액공제 · 감면

-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(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)

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조세감면제도	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조세감면제도
1	세액공제	§ 10	R&D 세액공제(중소기업)	14	세액감면	§ 85의6	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
2		§ 96의3	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15		§ 99의9	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(100% 감면)
3		§ 100의18	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	16		§ 99의11	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
4		§ 104의32	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17		§ 104의24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
5		§ 126의6	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18		§ 121의2	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
6	세액감면	§ 6⑦	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100% 감면)	19		§ 121의2	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
7		§ 12의2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100% 감면)	20		§ 121의4	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
8		§ 63	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	21		§ 121의8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조세감면(100%감면)
9		§ 63	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22		§ 121의9	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조세감면(100%감면)
10		§ 63의2	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23		§ 121의21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100% 감면)
11		§ 68	농업회사법인 감면(농업소득)	24		§ 121의22	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100%감면)
12		§ 85의6	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	25		§ 121의22	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100%감면)

## 03.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



### 농어촌특별세 개념

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목



###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

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\*으로 인한 감면세액에 20%

\* 비과세소득, 세액감면 · 세액공제, 소득공제,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



###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세액공제 · 감면

영농 · 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,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,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,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, R&D세액공제,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,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,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,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,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세액감면, 전자신고세액공제 등



# 04. 세액공제 ·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



## 중복적용 배제 개념

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기 위해 **한 과세기간에** 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제한



## 동일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(선택하여 공제 가능)

- 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vs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- ②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vs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


## 동일 과세연도에 주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

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조세감면제도	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 조항	조세감면제도
1	세액 감면	§ 6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1	세액 공제	§ 8의3	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
2		§ 7	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	2		§ 13의2	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
3		§ 63①	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3		§ 24	통합투자세액공제
4		§ 63의2①	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4		§ 25의6	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
5		§ 85의6	사회적기업 ·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	5		§ 30의4	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(§ 7와는 중복가능)
6		§ 104의24	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	6		§ 104의14	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
국민이 편안할, 보다 나은 국세행정

감사합니다

